

**남양주 진접 2 공공주택지구
전략환경영향평가서
(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)**

2018. 06



국토교통부

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

1. 개발기본계획의 개요

가. 계획의 배경 및 목적

-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, 무주택자 주택마련 등을 통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음
- 또한, 본 계획지구는 진접~퇴계원간도로(2018년 예정), 국도47호선, 국지도86호선 등으로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진접선(2020년 개통 예정)계획으로 광역 및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북측에 접한 진접택지개발지구로 인해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음
- 따라서,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, 택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지구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

나.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관련 [별표2]의 2. 개발기본계획 중 【가. 도시의 개발】에 관한 계획 중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[지정면적 : 1,292,388㎡(개발제한구역 587,743㎡ 포함)]에 해당

<표 1>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

구 분	개발기본계획의 종류	협의 요청시기
가. 도시의 개발	10)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	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

주) 공공주택 특별법 제22조에 따라,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[별표2] 비교3에 따라 지구계획수립시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시행으로 제외됨

다. 계획의 개요

- 가. 계획명 :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
- 나. 계획위치 :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, 연평리 일원
- 다. 계획면적 : 1,292,388㎡(개발제한구역 587,743㎡ 포함)
- 라. 사업기간 : 2018년 ~ 2022년
- 마. 계획수립기관 : 한국토지주택공사
- 바. 승인기관 : 국토교통부



(그림 1) 계획지구 위치도

2. 주민 등 의견수렴

-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하여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(주민 등의 의견수렴)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(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·공람 등), 제14조(주민 등의 의견 제출 방법 등), 제15조(설명회의 개최), 제16조(공청회의 개최)의 규정에 따라 평가서(초안)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실시함

2.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·공람

가. 공고일자

-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-111호(2018년 1월 30일)
- 중앙일간지 : 세계일보(2018년 1월 30일)
- 지방일간지 : 경인일보(2018년 1월 30일)

나. 공람기간 및 장소

- 공람기간 : 2018년 1월 30일 ~ 2018년 3월 5일(26일간, 공휴일 제외)
- 공람장소 : 남양주시청(도시개발과, 당직실),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(도시건축과), 진접 푸른물센터(홍보동 1층)
※ 토요일은 남양주시청 당직실, 진접푸른물센터 홍보동에서만 공람 실시

다. 주민의견 제출

- 제출기한 :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(2018년 3월 12일 까지)
- 제출방법 :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

라. 공개방법

-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)
-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(www.eiass.go.kr)

마. 공람 결과

- 제출된 주민의견 제출서 : 총 805건(환경분야 168건)
(2.4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내용 참조)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-111호

**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
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**

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「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」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. 1. 30.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계획의 개요

- 계획명 :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
- 위치 :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, 연평리 일원
- 계획규모 : 1,292,388㎡
- 시행자 : 한국토지주택공사

2. 공람기간 및 장소

- 공람기간 : 2018년 1월 30일(화) ~ 2018년 3월 5일(월)(공휴일 제외)
- 공람장소 : 남양주시청(도시개발과, 당직실), 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(도시건축과), 진접푸른물센터(홍보동 1층)
* 토요일은 남양주시청 당직실, 진접푸른물센터 홍보동에서만 공람 가능
-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: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(공람장소에 비치)

3. 주민설명회 개최

- 개최일시 : 2018년 2월 7일(수), 오후 7시
- 개최장소 : 진접주민자치센터 4층 크나새홀(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09-23)

4.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

- 제출기간 : 공람기간 시작일 부터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(2018년 3월 12일까지)
- 제출방법 :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제출

5. 기타사항

-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본 및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),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https://eiass.go.kr)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행복택지기획과(044-201-4524), 남양주시청 도시개발과(031-590-8468), 한국토지주택공사 환경교통단(055-922-370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(그림 2) 공고문



국민참여

National participation

- 협약진행현황 +
- 평가항목 결정내용 공람 +
- 평가서 초안 공람 -**
- 사용자지원 +
- . C&A
- . FAQ
- . 공지사항

평가서 초안 공람

사업명	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	
사업위치	• 연혁	소재지
	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(앞진로 978) 일대 일원	
		면적
		1,292,999 m ²
협의대상 (협의관련법령)	• 행정계획	
	[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]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	
사업구분	도시개발 /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(공공주택지구의 지정)	
사업개요	• 사업시행자 : 한국토지주택공사	
	• 승인기관 : 국토교통부	
	• 사업규모 : 1292999 m ²	
	• 사업비 : 00백만원	

초안공람

주민의견수렴

■ 협의업무 담당

협의기관	환경부	담당자	김주엽
담당부서		E-mail	crystal10@korea.kr
전화번호	044-201-7299	Fax번호	044-201-7304

■ 초안공람

초안	(남양주_초안)10840.인구주거.pdf		
	(남양주_초안)11000.종합평가 및 결론.pdf		
	(남양주_초안)00000.표지, 세네카, 목차.pdf		
	(남양주_초안)01000.요약문.pdf		
	(남양주_초안)02000.개발기본계획의 개요.pdf		
	(남양주_초안)03000.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 대안.pdf		
	(남양주_초안)04000.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.pdf		
	(남양주_초안)05000.지역개발.pdf		
	(남양주_초안)06000.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.pdf		
	(남양주_초안)07000.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결정 내용 및 조치내용.pdf		
	(남양주_초안)08000.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주민 등 의견.pdf		
	(남양주_초안)09000.계획의 적정성.pdf		
	(남양주_초안)10100.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.pdf		
	(남양주_초안)10130.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.pdf		
	(남양주_초안)10140.수원영역의 보전.pdf		
	(남양주_초안)10211.가상.pdf		
	(남양주_초안)10212.대기질(악취).pdf		
	(남양주_초안)10213.토양.pdf		
	(남양주_초안)10214.소음진동.pdf		
	(남양주_초안)10220.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.pdf		
(남양주_초안)10310.환경친화적 토지이용.pdf			
(남양주_초안)10320.일조장해.pdf			
(남양주_초안)10330.전파장해.pdf			
(남양주_초안)10110.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.pdf			
(남양주_초안)10231.친환경적 자원순환.pdf			
(남양주_초안)10232.온실가스.pdf			
(남양주_초안)12000.부록.pdf			
초안 공고일	2018.01.30	초안공람기간	2018.01.30 ~ 2018.03.05
공람장소	남양주시청(도시개발과, 당직실), 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(도시건축과), 진접푸른물센터(홍보동 1층)		
설명회장소	진접주민자치센터 4층 크나새홀(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009-29)		
설명회일시	2018년 2월 7일(수), 오후 7시	의견제출기간	2018.01.30 ~ 2018.03.12

■ 주민의견 수렴 결과

게시기간	2018.02.12~2018.03.05
내용	주민설명회 무산
자료	[남양주진접2_주민설명회_설명자료].pdf 남양주진접2.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_주민설명회_생략.공고(18.2.9).pdf

※ 일반 사용자는 군사시설의 원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.

(그림 5)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www.eiass.go.kr) 게재

2.2 주민설명회

가. 주민설명회 개최공고

-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람공고에 포함하여 공고

나. 주민설명회 개최장소 및 일시

구 분	내 용
일 시	• 2018년 2월 7일(수), 19:00
장 소	• 남양주시 진접주민자치센터 4층 크낙새홀(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09-23)

다.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

- 주민들의 설명청취 거부로 주민설명회 무산



(그림 6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) 게재

주민의견 수렴 결과	
계시기간	2018.02.12~2018.03.05
내용	주민설명회 무산
자료	[남양주전집2_주민설명회_설명자료.pdf 남양주전집2_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_주민설명회_생략_공고(18.2.8).pdf

※ 일반 사용자는 군사사업의 원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.

(그림 7)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https://www.eiass.go.kr) 게재

2.3 공청회

가. 공고일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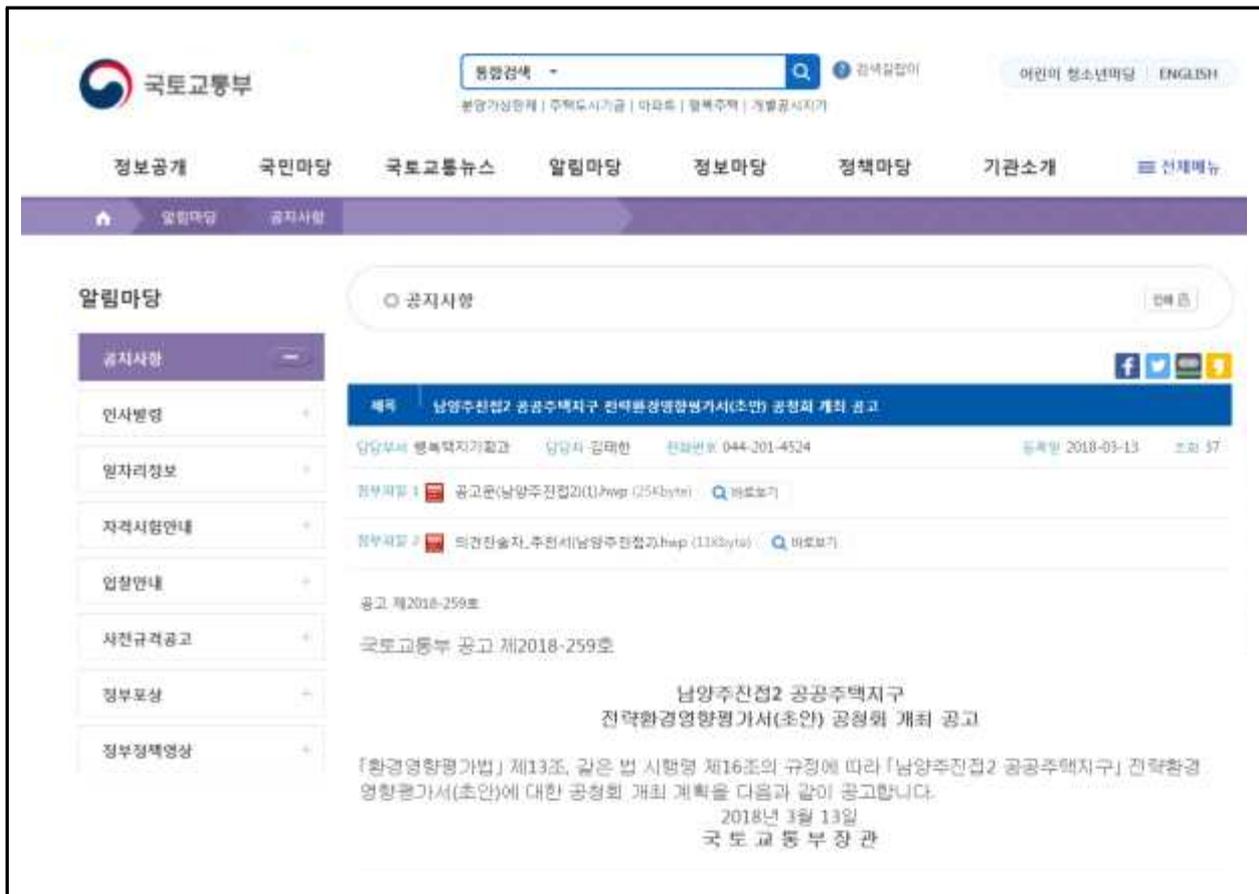
-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-259호(2018년 3월 13일)
- 일간신문 : 한겨레(2018년 3월 13일)
- 지역신문 : 중부일보(2018년 3월 13일)

나. 공청회 개최장소 및 일시

구 분	1차	2차
일 시	• 2018년 3월 28일(수), 14:00	• 2018년 4월 11일(수), 14:00
장 소	• 남양주시 진접주민자치센터 4층 크낙세홀(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09-23)	

다. 개최 결과

- 1차 공청회 : 정상진행(2.4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내용 참조)
- 2차 공청회 : 의견진술 및 토론 거부에 따른 무산



(그림 8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) 게재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-259호

**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
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청회 개최 공고**

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「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」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3월 13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계획의 개요

- 계획명 :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
- 위치 :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, 연평리 일원
- 계획규모 : 1,292,388㎡
- 시행자 : 한국토지주택공사

2. 공청회 일시 및 장소

구분	1차	2차
일시	2018년 3월 28일(수) 14:00	2018년 4월 11일(수) 14:00
장소	남양주시 진접주민자치센터 4층 크낙새홀 (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09-23)	

3. 기타사항

-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(1차 공청회 : 2018년 3월 21일, 2차 공청회 : 2018년 4월 4일)까지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국토교통부 행복택지기획과(fax 044-201-5663)로 제출하여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행복택지기획과(044-201-4524), 한국토지주택공사 환경교통단(055-922-370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(그림 9) 공고문

한겨레

hani.co.kr

국토교통부 박용진
새장마을 주민 대표
지정학의 포로들

2018년 3월 13일 화요일 17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-259호

남양주진점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청회 개최 공고

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「남양주진점2 공공주택지구」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3월 13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계획의 개요

- 계획명 : 남양주진점2 공공주택지구
- 위치 :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, 연평리 일원
- 계획규모 : 1,292,388㎡
- 시행자 : 한국토지주택공사

2. 공청회 일시 및 장소

구분	1 차	2 차
일시	2018년 3월 28일(수) 14 : 00	2018년 4월 11일(수) 14 : 00
장소	남양주시 진접주민자치센터 4층 크나세움 (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09-23)	

3. 기타사항

-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(1차 공청회 : 2018년 3월 21일, 2차 공청회 : 2018년 4월 4일)까지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국토교통부 행복택지기획과(fax 044-201-5663)로 제출하여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행복택지기획과(044-201-4524), 한국토지주택공사 환경교통단(065-922-370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중부일보

joongboo.com

자세게 알면 2540 불타면
행복한 도시와 새마을
만들어요. 경기도사랑사

8 경제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-259호

남양주진점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청회 개최 공고

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「남양주진점2 공공주택지구」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3월 13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계획의 개요

- 계획명 : 남양주진점2 공공주택지구
- 위치 :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, 연평리 일원
- 계획규모 : 1,292,388㎡
- 시행자 : 한국토지주택공사

2. 공청회 일시 및 장소

구분	1차	2차
일시	2018년 3월 28일(수) 14:00	2018년 4월 11일(수) 14:00
장소	남양주시 진접주민자치센터 4층 크나세움 (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09-23)	

3. 기타사항

-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(1차 공청회 : 2018년 3월 21일, 2차 공청회 : 2018년 4월 4일)까지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국토교통부 행복택지기획과(fax 044-201-5663)로 제출하여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행복택지기획과(044-201-4524), 한국토지주택공사 환경교통단(065-922-370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(그림 10) 신문공고



(그림 11) 공청회 전경

2.4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내용

구 분	의견요지	반영여부(미반영 사유)		비 고
1	○차량 지체 및 서행으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	반영	○차량증가에 따른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완충녹지(대기오염 정화수종 식재)를 확보하는 토지이용구상(안)을 제시함	초안 의견 제출
2	○사업시행에 따른 왕숙천 주변 환경 파괴가 예상됨 ○수질오염에 대한 오염량 및 수치 등에 대한 언급이 없음	반영	○현재는 지구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로 정성적인 예측과 일반적인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으며, 향후 세부계획이 수립되는 환경영향평가지 왕숙천에 미치는 세부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제시하겠음	"
3	○개발제한구역 면적은 표기하였으나,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언급이 없음	반영	○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「제9장 계획의 적정성, p.98」에 농업진흥구역(529천㎡) 내용을 제시하였으며, ○또한, 금회(전략환경영향평가서) 「제5장 지역개황」에 알아보기 쉽도록 농업진흥구역을 추가로 제시함	"
4	○아파트 설립시 차량증가에 따른 크낙새 영향이 예상됨	반영	○조류 현지조사(1차_2017.07, 2차_2018.04) 결과,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서 크낙새는 관찰되지 않았으며, 각종 문헌(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) 및 기사에도 1990년대 이후 남한에서는 공식적인 관찰기록이 없다고 제시됨 ○한편, 세부 계획이 수립되는 환경영향평가지 모니터링계획(현지조사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등)을 수립하여 크낙새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실시하겠음	"

주)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람기간 중 제출된 의견서(환경분야) 요약

구 분	의견요지	반영여부(미반영 사유)	비 고	
수용 반대 대책 위원회	○ 사업시행자가 용역비를 주고 환경전문 업체에 발주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, 택지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못함	반영	○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자는 환경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기관(업체)에서 수행하므로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음	공청회 제출 자료
	○ 사업시행 이후에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현재 사업시행을 위하여 거치는 통과외레이고, 마치 현재의 택지개발 사업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각본임	반영	○ 본 사업은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관련 [별표2]의 2. 개발기본계획 중 【가. 도시의 개발】에 관한 계획 중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해당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	"
	○ 인간 생존환경과 경제적 환경을 무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근본적으로 그 의미를 인정받기 어려움			
	○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내각, 연평 일원의 엇비슷한 3곳의 입지 비교만 있을 뿐, 현재의 위치 자체에 대한 타당성 검토 조사는 거의 없음	반영	○ 계획지구의 입지 타당성 검토(주택 수요공급의 적정성 등)결과를 추가로 제시함	"
	○ 택지사업은 국가폭력(강제수용)을 남용하여 산업생산단지의 파괴, 농민의 일자리 등 2,000여개의 일자리 강탈, 농민 삶의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임	-	○ 본 사업은 국민 주거복지 향상의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추진중인 국가정책사업으로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법령에 의거 이주·생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	"
	○ 국도 47호선과 진접-퇴계원간의 통과도로를 택지개발에 적합한 인프라 구축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음	-	○ 해당 계획지구는 진접선 계획 및 신설역사(장래 풍양역)의 역세권 입지를 활용한 토지이용과 주변 교통체계, 주택 수요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인구로 인한 교통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입지 및 경계를 설정하고자 하였으며, ○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지구지정 이후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·시행 예정임 ○ 개선대책 수립 시 면밀한 교통수요 예측 및 관련 계획의 검토, 현황조사·분석을 시행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개선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	"

구 분	의견요지	반영여부(미반영 사유)	비 고
수용 반대 대책 위원회	○ 베드타운의 건설은 지역발전이라 할 수 없으며, 자연환경 훼손이며, 공해도시와 교통지옥의 도시건설임	- ○ 진접2 공공주택지구는 서민 및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이외에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을 배치할 예정으로 자족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 예정이며, ○ 공원·녹지, 도로, 학교, 관공서 및 문화시설 등을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여가공간 조성 및 안락한 정주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임	공청회 제출 자료
	○ 농업진흥지역은 국토교통부 택지개발지침에 가능한 한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스스로 규정을 위배하고 있음	- ○ 진접2지구는 농지법 제31조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와 같은 법 제34조에 의거 농지전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으로, ○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당 협의를 완료하였으며, 지구계획 수립 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이행 예정임	"
	○ 계획지구가 위치하는 남양주 진접 지역은 주택 수요가 턱없이 부족한 지역임	- ○ 수도권 동북권의 인구 유입으로 인한 주택 수요가 예상되어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와 주변 공급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택 입지 및 규모, 공급시기 조정 등을 통해 중소형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추진코자 함	"
	○ 주택지구지정 면적 표기 시 개발제한구역만 표기되어 있고, 25페이지 환경현황의 면적 표기에도 전체면적의 약 42%에 해당하는 농업진흥지역을 고의로 누락시킴	반영 ○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「제9장 계획의 적정성, p.98」에 농업진흥구역(529천㎡) 내용을 제시하였으며, ○ 또한, 금회(전략환경영향평가서) 「제5장 지역개황」에 알아보기 쉽도록 농업진흥구역을 추가로 제시함	"
	○ 남측에 농업진흥지역이 없음에도 농업진흥구역 훼손 되는 것으로 용어를 바꿔 표현함	반영 ○ 평가준비서 작성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내용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잘못 오기한 내용이며,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부터 정정된 내용을 제시함	"
	○ 차량증가에 의한 도로 위에서의 차량지체, 정체현상 등으로 버려지는 기간과 오염물의 발생의 원인이 됨	반영 ○ 차량증가에 따른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완충녹지(대기오염 정화수종 식재)를 확보하는 토지이용구상(안)을 제시함 ○ 향후, 지구계획 수립시 세부 토지이용계획을 제시하겠음	"

구 분	의견요지	반영여부(미반영 사유)	비 고
주민1	○ 지역주민 80% 이상 반대하고 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사업취소를 할 수 있는가?	- ○ 관련법 상 주민동의율에 따른 사업취소 근거는 없음	공청회 주민 의견
주민2	○ 헌법내용에 국민행복추구권이 있는데 지역주민 80% 이상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취소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 주민 행복추구권과는 거리가 있고, 헌법 위배 사항임	- ○ 본 사업은 국민 주거복지 향상의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추진중인 국가정책사업이며, ○ 향후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보상 및 이주·생활 대책 마련 예정임	"
	○ 지난 47년간 그린벨트 내에서 농사지며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으로 향후 그린벨트 해제 되는 날만을 기대하고 지냈는데 지금에 와서 강제수용은 주권 박탈임	- ○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해 『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』에 의거 공인된 감정평가업자(LH 1인, 지자체 1인, 주민 1인)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는 등 (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』 제16조 제6항) 관련 규정에 의거 공정한 보상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	"
주민3	○ 주민이 80% 이상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국토교통부 상부 결정권자에게 보고해야 함	- ○ 관련 규정 및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보고하겠음	"
	○ 지역주민 82.3%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부 담당자에게 철저히 보고해야 함		
주민4	○ 진접2 지구 내 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지 대안이 있느냐?	- ○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·시행할 예정임	"
주민5	○ 진접2지구에서 농사일하는 사람(약 2,000명)에 대한 일자리 제공 가능하냐?	- ○ 진접2 공공주택지구는 서민 및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이외에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을 배치할 예정으로 자족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음	"
	○ 사업자측과 주민들의 의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달라!(시범지구 지정)	- ○ 관련 절차에 따라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추진중임	"

구 분	의견요지		반영여부(미반영 사유)	비 고
주민6	○ 계획지구 북측에 위치한 이마트를 제외할 사유는?	-	○ 계획지구 북측의 이마트는 남양주시 고시 제2008-193호('18.12.10)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시장) 결정된 시설로 계획지구 내 포함되지 않았음	공청회 주민 의견
주민7	○ 농지를 대체 할 수 있는 토지를 연평리 쪽에 확보해 달라!	-	○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에서는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을 원하고 사업시행자가 동의한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행이 가능함	"
주민8	○ 단순 토지보상이 아닌 장래 수익(농작물 생산)을 반영한 비용을 공시지가에 반영해야 함	-	○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법령에 의거 보상할 예정임	"
주민9	○ 공공주택지구를 내각리, 연평리 말고 남양주 내 구릉지(야산)를 개발하여야 함	반영	○ 계획지구는 남양주시의 주요 개발축상에 위치하고, 지하철 4호선 연장선 개통 등 공공주택지구로서 입지가 우수하여 지구지정을 추진함	"
주민10	○ 공공주택 건설시 베드타운으로 될 것임	-	○ 지구계획 수립단계에서 도시지원시설 용지 등을 배치할 예정으로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 도모할 계획임	"
	○ 이 지역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로컬푸드 지역으로 추가 주택건설 계획에 반대함	-	○ 당해 지역 내 지역특성화 사업 및 경작 등의 적절한 보전 또는 이전에 대하여 지구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과 협의 하겠음	"
주민11	○ 교통체증에 따른 환경오염이 예상됨	반영	○ 차량증가에 따른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완충녹지(대기오염 정화수종 식재)를 확보하는 토지이용구상(안)을 제시함 ○ 향후, 지구계획 수립시 세부 토지이용계획을 제시하겠음	"
	○ 강남의 주택개발처럼 해달라!	-	○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	"
	○ 종합병원, 기관시설, 종합대학교 등의 계획에 포함하라!	-	○ 지구계획 수립단계에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음	"

주)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기간 및 공청회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요약